

임실군의회 공고 2024 - 2호

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임실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4. 1. 16.

임실군의회 의장



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 안 이 유

「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중 의원연구단체 등록 업무분장의 변경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

2. 주 요 내 용

가. 업무분장 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(안 제4조제4항)

- 사무는 의정팀장이 처리하고 → 사무 및
- 소관 전문위원 → 의회사무과장

나.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수정

3. 참 고 자 료

가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, 「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 : 2024. 1. 16 . ~ 2024. 1. 22 .(6일간)

라. 기 타

- 1)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
- 2) 관련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의원연구단체의 구성)” 을 “(연구단체의 구성)” 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)” 을 “(연구단체의 등록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별지 제2호 서식” 을 “별지 제2호서식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활동계획서” 를 “연구활동 계획서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사무는 의정팀장이 처리하고” 를 “사무 및” 으로, “소관 전문위원” 을 “의회사무과장” 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)” 를 “(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의원연구단체” 를 “의원 연구단체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중 “의원연구단체” 를 각각 “연구단체” 로 하고, 같은 항 중 “30일이내” 를 “30일 이내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중 “의원연구단체” 를 “연구단체” 로 한다.

제6조제5호 중 “의원연구단체” 를 “연구단체” 로 한다.

제8조 중 “활동계획, 경비” 를 “연구활동 계획, 경비” 로, “별지 제4호 서식” 을 “별지 제4호서식” 으로, “별지 제6호 서식” 을 “별지 제6호서

식” 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**계획**심사결과” 를 “**계획** 심사결과” 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본문 중 “**연구활동계획서**” 를 “**연구활동 계획서**” 로 하고,
같은 조 제3항 중 “**별지 제4호 서식**” 을 “**별지 제4호서식**” 으로, “**별지 제6호 서식**” 을 “**별지 제6호서식**” 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**연구 활동**” 을 “**연구활동**” 으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(**의원연구단체 폐지**)” 를 “(**연구단체 폐지**)” 로 한다.

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의원연구단체의 구성) ① ~ ③ (생략)	제3조(연구단체의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제4조(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) ① (생략)	제4조(연구단체의 등록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대표자는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<u>별지 제2호 서식</u> 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 <u>별지 제2호서식</u> ----- -----.
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연구단체가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<u>활동계획서</u> 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<u>연구활동 계획서</u> ----- -----.
④ 연구단체의 등록 <u>사무는 의정팀장이 처리하고</u> 연구활동 운영에 관한 사무는 <u>소관 전문위원</u> 이 지원한다.	④ ----- <u>사무 및</u> ----- ----- ----- <u>의회사무과장</u> ----- -----.
제5조(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)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<u>의원연구단체</u> 운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5조(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 <u>의원 연구단체</u> ----- -----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. 다만, 위원회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⑥ (생략)

⑦ 위원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.

⑧ 위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8조(심사결과의 알림)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등록적격여부, 연구주제, 활동계획,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6

⑤ -----
- 연구단체-----
-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--- 연구단체-----
----- 30일 이내-----
-----.

⑧ -----
- 연구단체-----

-.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 연구단체 -----

제8조(심사결과의 알림) -----

연구활동 계획, 경비 -----
----- 별지 제4호서식-----
----- 별지 제6호서

호 서식에 따라 이를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.

제9조(연구활동비의 지원 등) ① (생략)

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되, 연 2회 이상 분할(연구활동 계획심사결과 통지 후,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사 후)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③·④ (생략)

제11조(연구활동 계획서의 제출)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위원회는 회부된 연구활동 계획서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에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 한다.

제13조(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) ① (생략)

식-----
-----.

제9조(연구활동비의 지원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계획 심사결과
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연구활동 계획서의 제출) ① -----
연구활동 계획서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별지 제4호서식-----

----- 별지 제6호서식-----.

제13조(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
내 연구 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
는 연구활동 종료후 1개월 이내에
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
야 한다.

③ (생 략)

제14조(의원연구단체 폐지) (생 략)

② -----
- 연구 활동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연구단체 폐지) (현행과 같
음)

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임실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(이하“연구단체”라 한다)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, 의정 및 행정전반,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임실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.
2.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.

제3조(연구단체의 구성)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2명 이상 임실군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하고,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(이하 “대표자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에서 호선하며, 연구단체를 총괄하고 임실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에게 연구활동 결과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.

③ 의원은 1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4조(연구단체의 등록 등)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대표자는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연구단체가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연구단체의 등록 사무 및 연구활동 운영에 관한 사무는 의회사무과장이 지원한다.

제5조(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)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임실군의회 의원 전원으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. 다만, 위원회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.

⑦ 위원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.

⑧ 위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**연구단체**의 연구활동계획의 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.

1.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
2.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 활동계획(변경)의 승인에 관한 사항
3.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
4.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**연구단체**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7조(등록의 취소) 위원회는 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 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 하게 할 수 있다.

1.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2.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
3. 연구단체 등록 후 2년간 연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

제8조(심사결과의 알림)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등록적격여부, 연구주제, **연구 활동 계획, 경비**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**별지 제4호서식**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심사결과를 **별지 제6호서식**에 따라 이를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.

제9조(연구활동비의 지원 등)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되, 연 2회 이상 분

할(연구활동 **계획 심사결과**와 통지 후,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사 후)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.

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.

제10조(공동참여)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·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11조(연구활동 계획서의 제출)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**연구활동 계획서**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연구활동 계획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회부된 연구활동 계획서 심사결과를 **별지 제4호서식**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에 결과를 **별지 제6호서식**에 따라 통보하여 한다.

제12조(연구활동 계획서의 변경) ①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② 의장은 심사결과를 **별지 제6호서식**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3조(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)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

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 **연구활동**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“의원연구사례집”으로 발간할 수 있다.

제14조(연구단체 폐지)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폐지된다.

연구단체 등록신청서

「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.

1. 단체명칭 :
2. 설립목적 :
3. 단체 인적사항

소속 상임위원회	성명	서명	비고

년 월 일

신청인대표자 : (인)

임실군의회 의장 귀하

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

「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단체 변동사항을 통보합니다.

연 구 단 체 명			
변 동 의 원	당 초	의원	
	변 경	의원	
변 동 일 자	년 월 일		
변 동 사 유			
기 타			

년 월 일

신 청 인 대 표 자 : (인)

임실군의회 의장 귀하

연구활동 계획서

「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연구단체명			
연구내용		주 제	
		목 적	
연구활동기간		년 월 일 ~ 년 월 일	
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		(별첨)	
연구 활동비	총 액	금 원(W)	
	산출내역	(세부내역 별첨)	
기 타			

년 월 일

신청인 대표자 : (인)

임실군의회 의장 귀하

심사결과 통보서

「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 및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연구단체의 ○○년도 ○○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.

연구단체명		
대 표 자		의원
연 구 주 제		
심 사 결 과	심 사 내 용	
	결 과	

년 월 일

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위원장 (인)

임실군의회 의장 귀하

연구활동 계획서 변경신청서

「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 계획서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연구단체명			
연구주제 변경내용	당초	연구주제	
		연구목적	
	변경	연구주제	
		연구목적	
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			
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			(별첨 : 구체적으로 서술)
연구활동비	총 액	금	원
	산출내역		
특기사항			

년 월 일

신청인 대표자 : (인)

임실군의회 의장 귀하

심사결과 통보서

「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 및 제11조제3항,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연구단체의 ○○년도 ○○에 대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.

연구단체명		
대 표 자		의원
연 구 주 제		
심 사 결 과	심 사 내 용	
	결 과	

년 월 일

임 실 군 의 회 의 장 (인)

의원 연구단체 대표 귀하

연구활동 결과보고서

「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○○년도 ○○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연구단체명				
연구내용	연구주제			
	연구목적			
연구활동비	수령액	금	원(W)	
	집행액	금	원(W)	
	잔 액	금	원(W)	
	집행내역 (별표 기준참고)	물품구입 및 인쇄비	금	원(W)
		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	금	원(W)
		전문가 활동 경비	금	원(W)
		기 타	금	원(W)
특기사항		“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”		

- 붙 임 1. 연구활동 세부내용 결과보고서 1부
 2.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.
 3. 기타 필요한 사항

년 월 일

신 청 인 대 표 자 : (인)

임실군의회 의장 귀하

[별표]

연구활동비 정산기준

활동비목	정산내역 기준	비 고
물품구입비 인쇄비 등	○ 연구활동을 위해 구입한 물품 및 인쇄비 등을 세부내역별로 계산	영수증 첨부
행사비용	○ 간담회 또는 토론회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소요경비 (식대 등)	영수증 첨부
비 고	○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적용기준이 없는 경비는 통상적인 예에 의하여 산출	

□ 『지방자치법 시행령』

제36조(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)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(이하 “정책지원전문인력”이라 한다)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·조사·연구,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.

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.

□ 『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』

제4조(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)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대표자는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연구단체가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연구단체의 등록 사무는 의정팀장이 처리하고 연구활동 운영에 관한 사무는 소관 전문위원이 지원한다.

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-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